

**돼지의 살처분
보상금제도와
양축가의 인식**

돼지가 콜레라에 감염되었을때 그 전파를 막고 양돈농가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살처분 보상금제도의 이용이 극히 적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양돈농가의 인식제고가 요구되고 있다.

미국 등 선진 양돈국가는 벌써 몇년전에 돼지 콜레라를 퇴치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저 끔찍한 82년도의 콜레라파동 이후에도 콜레라가 연례행사처럼 반복 발생하고 있다.

통계상으로 보면, 돼지 콜레라의 발생은 82년도의 3,427두에서 84년 1,890두, 85년 1,438두로 점차 줄고 있는 추세이나 아직도 그 숫자가 엄청나다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금년에도 벌써 1월중에 다섯군데에서 165두나 발생했다니 앞으로 얼마나 많은 돼지가 콜레라에 감염되어 양돈농가에 피해를 줄지 걱정이 앞선다.

우리나라가 단기간에 걸쳐 콜레라를 퇴치한다는 것이 난망한 일이라고 한다면, 그 발생을 줄이고 전염되는 것을 막아서 양돈농가의 손실을 최소화하는데라도 힘을 쓰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콜레라의 발생과 전파를 막기 위한 노력으로 살처분 보상금제도를 법으로 만들어 운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돼지의 살처분 보상금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양돈농가가 상당수 있고, 또 이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해 이를 이용하지 않는 양돈농가도 많은 것이다.

따라서 차제에 정부의 살처분 보상금제도가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올바르게 알고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피해방지와 이용을 주저하는 양돈농가들의 인식을 새롭게 한다는 측면에서 살처분 보상금제도를 알아보는 것도 뜻있으리라 본다.

정부는 82년 4월 1일 가축의 전염성 질병의 발생과 전파를 방지할 목적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전면 개정하고 살처분 보상금제도를 도입했다. 살처분 보상금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염병은 소의 경우에는 우역, 우폐역, 구제역 등이고 돼지의 경우에는 콜레라가 이에 해당된다.

따라서 양돈농가는 자신의 돼지가 콜레라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이와같은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는 가축위생시험소장을 현지에 출장케 하여 전염성 질병에 대한 여부와 살처분의 범위 등을 조사·보고케 한다. 살처분여부와 범위를 보고받은 도지사는 가축방역상 살처분의 필요성이 있다고



△ 콜레라로 죽은 돼지를 매몰하고 있다.

판단되면 축주에게 살처분 명령을 하고, 축주는 가축방역관 입회하에 살처분한후 사체를 소각하거나 매몰하도록 되어있다.

이때 도지사는 돼지의 격리, 압류, 이동제한, 교통차단, 출하금지 등을 실시하며 소독과 예방접종등을 명할 수 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은 살처분을 했을때 시가의 80%를 보상금으로 지급해 주도록 하여 양돈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있다.

보상금은 살처분 당시의 돼지 체중에 따라 다르나 ▷가축위생시험소장 ▷가축방역관 2명 ▷시·군 축정계장 ▷가축 또는 축산물을 취급 또는 거래하는 사람으로 이 업무에 다년간 경험을 가진 사람 1명 등 총 5명이 평가한 금액을 평균하여 평가액으로 결정하고 있다.

86년 3월25일 현재의 평가액 상한선은 ▷30kg 이하의 이유자돈은 36,000원까지 ▷31-60kg까지의 육성돈은 78,000원까지 ▷61-100kg의 성돈은 131,000원까지 ▷101kg 이상의 돼지는 생체 kg당 1,305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상해 주고 있다. 보상금은 시세의 80%이므로 평가액은 시세의 변동에 따라 정부에서 수시로 조정한다.

살처분한 돼지의 평가액이 결정되면 축주는 ▷피보상자의 주소 및 성명 ▷살처분된 돼지의 성별, 연령, 모색 및 생체량 ▷살처분 명령서 사본 ▷가축방역관 의견 ▷소각 또는 매몰확인서(가축방역관 확인) ▷평가인의 평가서 사본 ▷검정성적서 사본(가축위생시험소장 발행) ▷가축위생시험소장 의견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된다.

정부는 금년에 국비 1억8천만원과 축산진흥기금 2억원 등 총 3억8천만원을 살처분 보상금으로 책정해 놓고 있다.

일부 양돈농가는 돼지가 콜레라에 감염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쉬쉬하거나 도축장으로 출하하는 경우도 있다한다. 신고를 했을때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까를 걱정하기에 앞서 결국은 나와 내 이웃, 국가를 위한다는 측면에서 신고를 의무화 하도록 인식을 새롭게 하자. 신고를 하고 난 후에 일어나는 작은 귀찮음은 참자.

또 행정당국도 반상회 등을 통해 양축가들에게 살처분 보상금제도를 홍보하고 전염병 발생 시에는 반드시 신고하도록 유도하여야 하겠다.

그리고 신고한 양축가들에게는 보다 빨리 진단결과를 통보해 주고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장기적으로 지방의 소규모 도축장을 통폐합해서 도축장과 가축위생연구소 등과 연계하여 도살시에 콜레라 등을 검색하여 예방조치를 취할 계획이라 한다. 인력과 재정에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위의 계획과 더불어 돈단독과 기타 전염병에도 살처분 보상금제도를 적용하길 바란다.

양돈농가의 신고와 당국의 효율적인 법 운용은 바로 콜레라 퇴치와 연관되기에 중요하다.